

보안 과제(), 일반 과제(O) / 공개(O), 비공개()

발 간 등 록 번 호

11-1721000-000820-01

수탁 / 2023-032

2023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2024.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연구개발 기간 : 2023.01.01.~2023.12.31.) 사업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2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책임자 : 이 경 재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 조 성 식 연구위원

정 한 별 부연구위원

이 지 혜 위촉연구원

채 홍 남 위촉연구원

김 현 홍 부연구위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최종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최종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보안[]		
중앙행정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명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전문기관명 (해당 시 작성)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SB1103	100%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영문	Researcher's Rights Protection Committee Operation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자등록번호		229-82-01678			
		주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법인등록번호		110271-0004210			
연구책임자		성명	이경재				직위		선임 연구위원			
		연락처	직장전화	043-750-2312		휴대전화		010-5573-2724				
			전자우편	kjlee@kistep.re.kr		국가연구자번호		10176510				
연구개발기간		2023. 1. 1. - 2023. 12. 31. (12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476,000							476,000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담당자 실무담당자		성명	이지혜				직위		연구원			
		연락처	직장전화	043-750-2655		휴대전화		010-5110-4212				
			전자우편	jhlee1024@kistep.re.kr		국가연구자번호		12948029				

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2월 일

연구책임자: 이 경 재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정 병 선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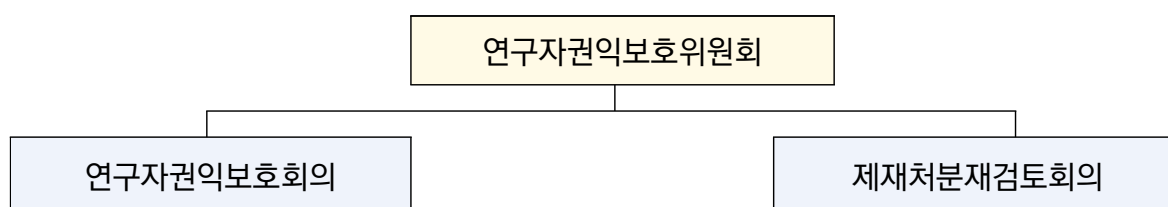
〈 요약 서 〉

사업명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SB1103	100%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3.01.01~2023.12.31					
총 연구개발비		총 476,000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76,000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개발[]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 연구자 권익보호와 제재처분의 일관성 및 전문성 확보 - 억울하게 처벌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 권익보호 제도 및 공정하고 일관된 제재처분의 기준 마련					
	전체 내용	○ 제재처분의 적절성 재검토를 위한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 -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효율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회의 제반 사항 준비 및 주요 내용 사전 검토, 상정 안건 작성, 심의 활동 지원 ○ 연구자권익보호회의 운영을 위한 연구윤리 및 연구자 권익보호 정책, 제재처분 절차 및 제도 개선 연구 -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권익보호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 및 연구자권익보호회의 안건 준비 지원 ○ 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실무 가이드라인 고도화 - 법률전문가 및 실무전문가들과의 검토를 통한 제재처분 감경 기준 및 제재정보 공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연구현장 및 유관기관 대응 등을 통해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실무 가이드라인 개정본 준비					
연구개발성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권익보호 증진에 기여 ○ 제재처분에 대한 공통된 기준 및 절차의 확산에 기여 ○ 연구현장의 윤리 의식 제고와 함께 연구자 권익보호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유도 ○ 연구자 권익보호 및 제재처분 재검토 관련 제도 개선사항 도출 ○ 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및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활용한 제재처분 제도개선 실효성 강화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							
국문핵심어	연구자	권익보호	위원회	운영	재검토		
영문핵심어	Researcher	Rights Protection	Committee	Operation	Re-examination		

요 약 문

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연구자의 권익보호와 제재처분의 일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해 연구자가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권익을 보호하고, 제재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
 -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연구윤리, 연구자권익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의 제안
 - * 국정과제 74-4. 자율·창의 기반의 연구자 지원 제도·플랫폼 마련(연구자 권리 제고)으로 지정(2022.5)



- 연구자권익보호회의와 제재처분재검토회의를 통해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국가 R&D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연구자의 권익보호 및 연구윤리 등의 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자권익보호회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을 심의하는 제재처분재검토회의로 구성
 - 연구환경 변화 대응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관련 사례 및 다양한 전문 시각이 반영된 정책 및 제도 제안
 - 범부처를 포괄하는 제재처분 재검토를 통해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제재처분 기준 제시

2.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운영
 -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윤리 및 부정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안건 수립, 검토 및 심의 업무 지원
 - * 연구자권익보호회의(2회)에서 제재처분 재검토 주요쟁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등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부정 방지 관련 4개 정책 안건 처리
 - 회의 사전 준비 및 회의 개최 현장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
 - 회의 안건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수립 및 추진 지원

- 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국내·외 사례 및 다양한 전문 분야의 시각이 반영된 정책 및 제도 제안
- 제재처분재검토회의 개최·운영
 - 부처 제재처분의 적절성 재검토를 위한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의 제반 사항 및 주요 사항 사전검토, 상정안건의 심의 활동을 지원
 - * 2023년 제재처분재검토회의(총 19회)에서 소관부처 제재처분 심의자료 및 재검토 요청자의 이의제기 자료를 바탕으로 총 127건의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을 처리
 - 재검토요청자의 재검토요청서, 부처(전문기관) 처분 내용을 바탕으로 재검토요청별 심의자료(안건) 작성
 - * 관련 법령의 세부내용 확인 및 부처(전문기관) 처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회의 안건 심의 결과에 따른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 부처(전문기관)의 후속조치 지원
 - 범부처적인 제재처분 재검토를 통해 동일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제재처분 기준 제시의 토대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개선사항 발굴
 - 연구현장 및 유관기관 대응 등을 통해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률전문가 및 실무전문가들과의 검토를 통해 법령 개정, 실무 가이드라인 등 체계 고도화

3.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활용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위원회의 실효적 기능 강화
- 연구결과는 연구자권익 보호 및 제재처분 재검토 관련 제도 개선사항 도출 등 위원회 운영 효율화에 활용 가능
 - 연중 상시 운영되는 재검토회의의 자료는 연구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연구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연구자 권익 보호 정책의 수립에 활용
- 도출된 제재제도개선(안)은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안건상정, 실무가이드라인 또는 법령 개정(안) 도출 등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선순환 체계 마련



목 차

contents

제1장 서 론	1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3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4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 및 방법	5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6
제2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7
1. 연구자 권익보호의 의미	10
2. 설치배경 및 주요경과	14
3. 역할 및 구성	16
제3장 연구자권익보호회의	19
1. 제재처분 및 연구윤리 제도개선	22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심의	24
제4장 제재처분재검토회의	27
1.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 결과	30
2.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 내용	32
제5장 결 론	41
1. 주요 연구성과	43
2. 연구결과의 활용 및 발전방향	44
부 록	45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1기 운영실적 및 주요성과	47
2.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연도별 운영실적	49
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관련 법령 및 규정	51
4.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양식	72
5. 부처제출자료(각 부처→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76
6. 체크리스트(위원용)	87
7. 분야별 권익보호 사례	88



그림 목차

contents

〈그림 2-1〉 제재처분 재심사 과정	14
〈그림 2-2〉 범부처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안)	14
〈그림 2-3〉 위원회 신설에 따른 제재처분 절차 변화	16
〈그림 2-4〉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17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국가R&D사업에 대해 부처별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가 상존하고 별도의 재검토 기구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
 - 부처별 심의(제재처분평가단 : 전문기관 운영)에 따라 제재처분 결정 후, 연구자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 주체가 판단·처분하게 되는데, 원처분과 동일한 제재처분평가단이 재심의하여 공정성 및 연구자 권리 구제에 한계 존재
 - 제재처분의 공정성 및 연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이를 재검토하는 별도 기구가 설치·운영, (제1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촉, '21.2.22)
 - * 정부위원 4명 외 위원장 1명 포함 민간위원 92명 구성
 - 제재처분 심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총 92명 중 비과학기술분야(법률·회계·지재권 분야 등 회사) 및 여성위원 비중을 확대한 제2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23.3.30)
 - * 정부위원 5명 외 위원장 1명 포함 민간위원 92명 구성
 - * 교육부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비중의 증대로 교육부 정부위원 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와 연구자 권익보호·부정방지를 위한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필요
 - 2021년 2월부터 본격화된 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진행과 연간 재검토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
 -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과기정통부 훈령, 제142호)이 제정('21.2.22) 되면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지원기관으로 지정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과기정통부훈령 제142호) 〉

제19조(지원기관의 지정)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의 동향 등 조사·분석 및 제도개선, 정책개발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일관성·공정성 확보 및 연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재처분 재검토 체계 확립을 지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 시행('21.1.1)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구법(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비해 제재사유, 판단기준 등이 대폭 변동되고 시효도입, 기산일 폐지 등 제도변화 발생

- 혁신법이 우선 적용되는 만큼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제재제도를 해석할 필요성 대두 및 제재제도개선 체계 고도화 필요성 증대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개최·운영

- 제2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촉(2023.3.30.)
-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윤리 및 부정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안건 수립, 검토 및 심의 업무 지원
 - * 연구자권익보호회의(2회)에서 제재처분 재검토 주요쟁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등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부정 방지 관련 4개 정책 안건 처리
- 회의 사전 준비 및 회의 개최 현장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
- 회의 안건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수립 및 추진 지원
- 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사례 및 다양한 전문분야의 시각이 반영된 정책 및 제도 제안

○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개최·운영

- 부처 제재처분의 적절성 재검토를 위한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의 제반 사항 및 주요 사항 사전검토, 상정안건의 심의 활동을 지원
 - * 제재처분재검토회의(19회)에서 소관부처 제재처분 심의자료 및 재검토 요청자의 이의제기 자료를 바탕으로 127건의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을 처리
- 재검토요청자의 재검토요청서, 부처(전문기관) 처분 내용을 바탕으로 재검토요청별 심의자료 (안건) 작성
 - * 관련 법령의 세부내용 확인 및 부처(전문기관) 처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법령에 근거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검토심의를 위해 감경·가중기준을 고찰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도입
- 부처와 재검토요청자 측을 대상으로 재검토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피드백
- 회의 안건 심의 결과에 따른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 부처(전문기관)의 후속조치 지원
- 범부처적인 제재처분 재검토를 통해 동일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제재처분 기준 제시의 토대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개선사항 발굴

- 제재처분의 적법성 및 일관성 강화를 위해 혁신법 시행 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심의결과를 분석하여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전문가 및 실무전문가들과의 검토를 통해 법령 개정, 실무 가이드라인 등 체계 고도화

- * 혁신법 시행령 제12조3항(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에 따른 과제선정평가 관련) 및 시행령 67조4항(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신설(안) 마련
- * 혁신법 시행 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심의결과를 분석하여 주요쟁점사항을 도출하고 검토기준 제시(제재처분 가이드라인 5장) 및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수단과 절차에 대한 설명 보강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 및 방법

- 효율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운영의 지원을 통해 효과 제고
 - ‘제재처분재검토회의’와 ‘연구자권익보호회의’ 2가지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재검토회의의 안건 수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 인력을 구성
 - * 재검토요청 및 회의 개최 시기 등이 가변적인 점을 고려하여 지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구성하고, 안건 작성 및 회의 진행 지원
 - 상시 운영 가능한 제재처분재검토회의 구성(소위원장 1인, 위원 6인)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고 위원과의 연락 및 소통을 제고
 - 안정적으로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회의장을 확보하는 등 연중 상시 재검토회의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준비 활동 강화
- 주 단위 안건 접수에 따른 제재처분재검토회의 개최를 위해 검토 위원 선정 및 안건 사전 검토 추진
 - 검토 위원 선정 및 연락, 자료의 수집 제공 등 안건 사전 검토의 효율성 제고
- 위원회 운영사항의 상시 모니터링 및 결과분석을 위한 자료의 축적 등 향후 재검토 위원회의 활동 효율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
- 전문성 및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안 도출을 위해 해당 분야 법률전문가의 상시 자문이 가능하도록 법률자문위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실무자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 및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실무가이드라인(사례집), 법령개정안 등에 논의결과 반영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위원회의 실효적 기능 강화
- 연구결과는 연구자권익 보호 및 제재처분 재검토 관련 제도 개선사항 도출 등 위원회 운영 효율화에 활용 가능
 - 연중 상시 운영되는 재검토회의의 자료는 연구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연구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연구자 권익 보호 정책의 수립에 활용
- 도출된 제재제도개선(안)은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안건상정, 실무가이드라인 또는 법령 개정(안) 도출 등에 반영하여 제도개선의 선순환 체계 마련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 각 부처에 흩어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권익보호 증진에 기여
- 제재처분에 대한 공통된 기준 및 절차의 확산에 기여
 - 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일관성·공정성 확보
- 연구현장의 윤리 의식 제고와 함께 연구자의 권익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에 기여
 -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한 방안 수립에 기여
- 법률전문가 및 실무자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제도해석 및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제 2 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2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2월 22일 ‘제1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에 이어, 2023년 3월 30일 제2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법률·회계·지재산 분야 전문가 및 정부위원 포함 총 97명으로 구성
 - 연구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연구개발 수행부처로부터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
 - 연구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연구자 권익보호 장치를 최초로 마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
 -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연구윤리, 연구자권익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의 제안을 통해 바람직한 국가R&D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
- 2023년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2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19회를 개최하여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정하고 일관된 제재처분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
 - 제재처분 재검토 주요쟁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등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부정 방지 관련 4개 정책 안건 논의
 - 소관부처 제재처분 심의자료 및 재검토 요청자의 이의제기 자료를 바탕으로 127건의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을 처리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 등에 관한 정책·제도 등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 기준을 제시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검토·보완
- 보고서를 발간하여 2023년의 주요 활동을 정리하여 공유함으로써 성과 활용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모색에 기여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배경 및 필요성과 주요경과를 살펴보고, 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을 설명
 -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운영 절차와 2023년 주요 활동 및 실적을 안건별로 정리
 -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처리 절차와 2023년 운영내용 회의별로 정리

1. 연구자 권익보호의 의미

1) 연구자의 개념¹⁾

- 연구자는 최근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교육)는 물론 연구개발활동 종사자·경력자(직종) 및 예비 과학기술 인력인 이공계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
 - OECD는 과학기술인적자원(HRST : Human Resources for Science and Technology)²⁾을 과학기술 분야의 고등교육을 수료한 자 혹은 고등교육을 성공적으로 끝마치지는 못했으나 그에 해당하는 직무분야 종사자로 정의, 즉 교육과 직종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과학기술인력으로 인정
 - OECD가 정의한 연구자의 또 다른 정의인 연구개발인력(R&D Personnel)³⁾은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관련되어 고용된 사람 뿐만 아니라 이 활동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개발 관리자, 행정사무원을 포함하고 있음.
 - UNESCO는 과학기술인력(STP : Scientific and Technical Personnel)⁴⁾을 보유 학위(대졸 이상)에 관계없이 특정기관 또는 연구개발 부분에서 과학기술활동(R&D, 교육 등 특정 직종)에 참여하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자로 연구원(과학자 및 공학자, 기술자)과 연구 보조원을 포함

〈연구자(과학기술인력) 국제 기준 비교〉

구분	OECD	UNESCO	미국(NSF)	한국
명칭	HRST R&D Personnel	STP	Stem workforce	과학기술인력, 이공계인력
기준	교육 및 직종	교육 및 경력	교육 및 직종	교육 및 직종, 자격
교육	전문대졸 이상	고졸 이상	대졸 이상	전문대졸 이상 자격보유자
전공	이학, 공학, 의학, 농학, 사회과학, 인문학	이학, 공학, 의학, 농학, 사회과학, 인문학	이학, 공학, 의학, 농학, 사회과학, 융복합 분야	이학, 공학, 융합 분야
직종	범위 제한	범위 제한	범위 제한	규정 없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7), National Science Foundation(2022) 수정

1) 정리 : KIRD 박진선 연구위원

2) 캔버라 매뉴얼(Canberra Manual, 1995)의 HRST는 과학기술인력자원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3) 프라스카티 매뉴얼(Frascati Manual, 2002)의 연구개발인력은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의

4) 유네스코(UNESCO, 1984)는 과학기술 지식의 도출, 진보, 확산, 적용을 하는 과학기술활동 참여자 모두를 포함

- OECD는 UNESCO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과학기술인을 정의하고 있고 국내 과학기술인 관련 법령과 정책은 OECD가 정의한 HRST를 수정한 개념을 주로 사용
- 「학술진흥법」에 따르면 연구자는 교육 및 연구기관(대학·평생교육시설·사내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학술 및 예술창작활동, 그리고 학술진흥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동 법의 정의에 따라 대학원생(석사·박사)도 연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⁵⁾

2) 권익의 개념

- 권익(權益)의 사전적 의미는 ‘권리(權利)와 그에 따르는 이익(利益)⁶⁾’으로 광의로는 ‘자연권으로서 부여된 힘’, 협의로는 ‘법에 따라 부여되는 힘’으로 구분하고 있음.
- 중국어사전은 광의의 권리를 천부인권으로서의 기본권으로 도덕적·법적 권리를 모두 내포하는 것으로, 협의의 권리를 권세와 이익, 일을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는 정당한 힘이나 자격,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으로 정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⁷⁾은 권리를 특정 생활 이익을 누리기 위해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으로 법 이전에는 존재 불가능한 개념으로 정의. 천부권 또한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틀에서 인정한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권리·의무 관계를 사회적 관점에서 조직화한 것을 법이라고 설명
 - Merriam-Webster 사전 등에서도 권익을 ‘Rights and Interests’로 정의함. 권리는(Right)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이익(Interest⁸⁾)은 권리, 자격 혹은 법적인 지분 등으로 설명. 여기에서도 권리(Right)는 자연권으로서의 권리⁹⁾, 법이 부여하는 권리¹⁰⁾, 시민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광의와 협의의 의미를 모두 내포

5) KISTEP 조성식 연구위원, 강다영 연구원, 2022

6) 권익(權: 저울추 권, 益: 더할 익)의 정의이며, 권리는 권세와 이익 혹은 법률용어로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으로, 이익(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으로 정의함(표준국어대사전, 민족국어사전)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신고민법총칙』(김중환, 박영사, 1983), 『민법총칙』(곽윤직, 박영사, 1985)을 참고하여 정의함

8) right, title, or legal share in something

9) something to which one has a just claim : such as the power or privilege to which one is justly entitled

10) qualities(such as adherence to duty or obedience to lawful authority) that together constitute the ideal of moral propriety or merit moral approval

□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른 이익’으로 정의

- 동 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혹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경우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이를 통해 권익의 개념 또한 유추 가능

□ 종합해 보면 권익은 권리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개념으로 광의로는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을, 협의로는 국가가 법으로 부여한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권리와 권익의 개념 비교〉

구분	권리(Right)	권익(Rights and Interests)
광의	• 자연권(천부인권)으로 도덕·법적 권리를 모두 포함	• 자연권과 그에 따른 이익
협의	• 법(국가)이 부여한 힘: 개인적인 권리-의무 관계가 사회적으로 조직화	• 법(국가)이 부여한 권리와 그에 따른 이익

* 출처 : 조성식, 이지혜, 2023

□ 권익의 정의에 대해 통일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교원, 학생, 장애인, 여성 등 각 분야와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¹¹⁾

3) 연구자의 권익

□ 과학연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74, UNESCO)가 연구자의 정의 및 권리에 대해 선언한 최초의 국제적 규범이며, 추후 본 권고 내 연구자의 학문적·직업적 자유, 연구자 인권 보호, 사회적 책임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윤리, 대학원생 권리장전 등으로 확대 발전

- 「과학연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세계인권선언(1948, UN)의 27조 1항의 규정을 계승한 것으로 연구자의 인권 보호부터 올바른 연구수행, 책임과 의무¹²⁾까지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음
- 연구자 권리에 대한 공식적 선언은 UNESCO가 시초이며 연구자 정의와 범위에 대한 부분이 과학기술인력(STP)과 닿아 있어 포괄적 연구자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11) 실무적으로 권리는 선언적인 의미로서 광의의 개념으로, 권익은 권리의 침해에 대한 사후적인 법적 구제 등을 포함하는 협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논리적인 설명은 부재한 상황임

12) 과학기술의 해악과 오용에 대해 언급하며 연구자의 권리와 함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함

- 「과학 및 과학연구자에 대한 권고(2017, UNESCO)」는 「과학연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개정한 것으로 연구자 보호 및 노동권 보장, 과학정보 보급 및 경력개발, 양성평등 및 대중 참여, 과학연구의 공공적 성격과 세계화 등을 강조하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
- 총 7장 48조로 구성되어 과학연구자의 정의와 적용범위, 연구자의 권리와 의무, 성공조건, 권고의 활용, 관련 규정 등을 담고 있어 과학연구자의 책임과 권리가 동시에 주어짐을 강조
 - 과학적 발견과 응용을 위한 연구개발은 인류에게 공헌하는 바가 크므로 과학의 가치를 인정하고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은 물론 이를 위한 교육, 설비 등의 지원을 언급
 - 동 권고에 따르면 연구자 권리는 연구개발 수행, 연구결과의 활용, 시민에 대한 영향력 등 연구개발활동 관련 전반에 걸친 연구개발 수행자의 권리를 의미함.
 - 또한 연구개발수행에 참여하는 회색지대(grey zone)의 연구자들을 권리 보장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기술자, 학생연구원 등까지 관련자를 최대한 보호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지적재산권에 있어서는 연구개발의 분야와 사례가 다양하여 ‘존중’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소유 및 활용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연구자 중 비교적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한 대학원생을 취약계층으로 판단,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 또한 발생
- 1990년대 미국에서 「대학원생 권리장전(Graduate Students Bill of Right)」을 만들어 체결
 - 국내에서는 노동시간, 저작권, 부당한 지시 등의 사례 접수를 토대로 2014년 KAIST를 비롯한 14개 대학에서 권리장전이 처음 도입된 이후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2015)’를 근거하여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모든 대학원을 대상으로 권리장전을 체결 권고
- ※ 권리장전에는 대학원생들에게 필요한 권리를 폭넓게 다루며 ①인격권, ②평등권, ③학업연구권, ④복리후생권, ⑤안전권, ⑥연구결정권 및 거부권, ⑦사생활보호권, ⑧연구성과 명의권·지식재산권, ⑨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등을 주요 골자로 조항과 내용은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선별하여 작성

2. 설치배경 및 주요경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처분이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연구자의 억울한 사례 호소, 공정성 부족에 대한 지적 및 행정소송 증가
 - 연구개발 과정에서 금전적 손실에 대해 연구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 발생
 - * (예시) A연구기관의 무인기 개발 프로젝트 도중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B행정기관이 감사를 통해 연구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처분(5명 총67억원)
 - 부처별 심의(제재처분평가단 : 전문기관 운영)에 따라 제재처분 결정 후, 연구자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 주체가 판단·처분
 - 원처분과 동일한 제재처분평가단이 재심의하여 공정성 및 연구자 권리 구제에 한계 존재
 - 부처별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가 상존
 - * (예시) ‘연구개발 수행포기’에 대한 참여제한은 과기부, 산업부는 ‘3년~4년’의 처분이 가장 많으나(각각 92.1%, 69.6%), 중기부는 ‘1년~2년’의 처분이 가장 많았음(66%)
- 제재심의 과정에서 연구자가 입장을 표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 제재처분 절차 보완 필요성 제기
 - 제재처분의 공정성 및 연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이를 재검토하는 별도 기구 설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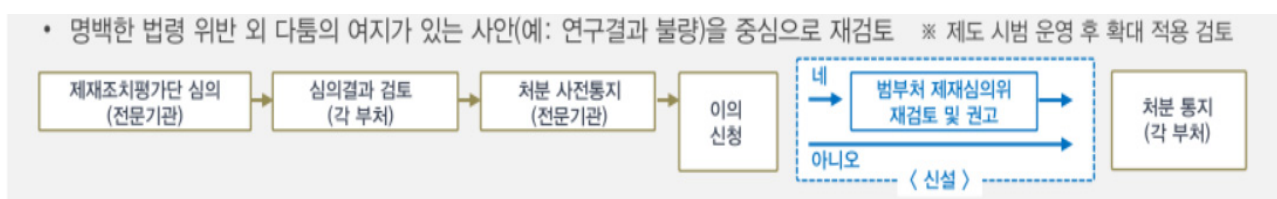
〈그림 2-1〉 제재처분 재심사 과정



- 억울하게 처벌받는 연구자가 나오지 않도록 연구자의 권익 보호 절차 및 공정하고 일관된 제재처분 기준 마련

-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R&D분야 규제혁파 방안(2018. 3.18)에서 연구자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 개선안으로 법부처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안) 제시

〈그림 2-2〉 법부처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안)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020. 6. 9)으로 각 부처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결과에 이의신청 시 이를 재검토하는 위원회(과기정통부 소속)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정(2021. 2.22)
- 민간위원 위촉 위원회 출범 및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2021. 2.22) 이후
 -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10회 개최, 22개 안전 처리 및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62회 개최, 336건 재검토요청 처리
 - 2021년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4회 개최, 7개 안전 처리 및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20회 개최, 91건 재검토요청 처리
 - 2022년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4회 개최, 11개 안전 처리 및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23회 개최, 118건 재검토요청 처리
 - 2023년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2회 개최, 4개 안전 처리 및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19회 개최, 127건 재검토요청 처리
- 제9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 및 제2기 위원 위촉식 개최
 - (일시) '23.3.20.(목), 오후 5시
 - (장소) 프레지던트 호텔
 - (참석자) 위원장 및 소위원장 등 민간위원 7인 및 정부위원 4인
 - (안전) (1호) 『제2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방안(안)
(2호)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계획(안)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 (일시) '23.7.13.(목), 오후 4시 30분
 - (장소) 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참석) 위원장 및 소위원장 등 민간위원 6인
 - (안전) (1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개선 필요성
(2호) 제재처분 재검토 관련 전문기관 간담회 회의 내용

□ 제10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개최

- (일시) '23.12.11.(월), 오후 1시
- (장소) 코리아나호텔
- (참석) 위원장 및 소위원장 등 민간위원 7인 및 정부위원 2인
- (안건) (1호)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운영개선 방안
(2호) 국가연구개발 제재제도 '23년 개선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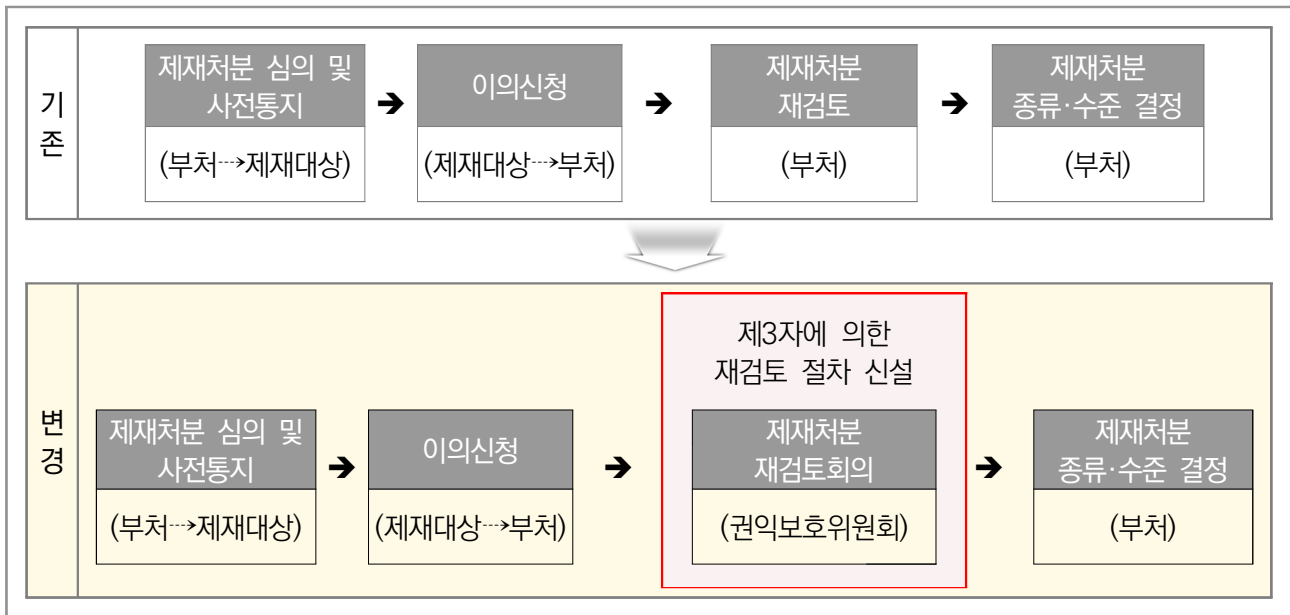
3. 역할 및 구성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역할

□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연구자 권익 보호 장치

- 동일한 제재처분평가단이 아닌 제3의 기관을 통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보다 객관성 있는 재검토 실시 및 연구자 권익보호에 기여

〈그림 2-3〉 위원회 신설에 따른 제재처분 절차 변화



□ 국가 R&D 제재처분의 공정성·전문성 및 범부처 일관성 도모

- 범부처적인 제재처분 재검토를 통해 동일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제재 처분 기준 제시

- 연구윤리, 연구자권익보호 등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통해 바람직한 국가R&D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
 - 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다양한 시각이 반영된 정책 및 제도 제안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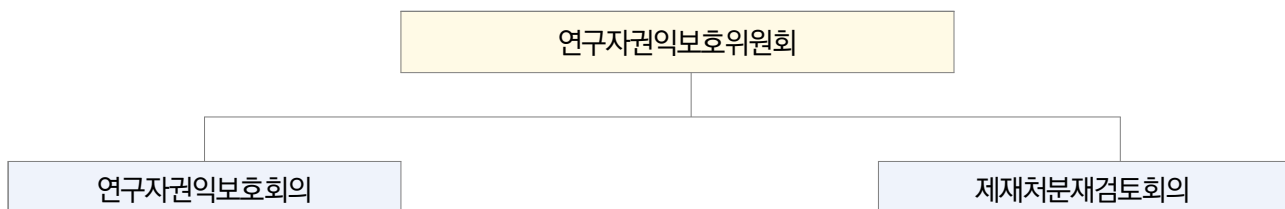
- 2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촉(2023.3.30.)

- (구성) 위원장 1명(민간) 포함,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92명으로 구성

- (정부위원) R&D 수행비중이 높은 부처의 소관부서 국장급
 - 혁신본부(성과평가정책국장), 과기정통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 산업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중기부(기술혁신정책관), 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
 - * 교육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비중이 높고, 재검토요청 건수가 증대됨에 따라 교육부 정부위원(인재정책기획관)을 1명 새롭게 위촉
- (민간위원)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및 법률·회계·지재권 분야 전문가를 54:46의 비율로 위촉
 - * 연구과제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3개 분류별(생명·의료·인문사회 / 기계·소재·에너지 / ICT·융합) 위원풀 구성
 -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처분 심의를 위해 총 92명 중 비과학기술분야(법률·회계·지재권 분야등 회사) 및 여성 비중 확대
 - * 1기 → 2기 변화: 대학(46.2 → 35.2%), 민간(38.5 → 47.3%), 여성(23.0 → 27.5%)

- (운영체계) ①연구자 권익보호 회의, ②제재처분 재검토 회의의 2가지 회의를 통해 위원회 의사결정 수행
 - 각각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최종 의사결정으로 간주

〈그림 2-4〉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① 연구자권익보호회의

- (기능)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부정 방지 등을 위한 정책 논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 민간위원의 안전 제안도 가능하며, 혁신본부가 안전작성 지원

- (구성) 위원장 1명(위원회 위원장), 정부위원 5명과 안건 내용을 고려하여 8명 이내의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위원 등 총 13명 이내로 구성
 -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회의는 7명의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소위원장이 민간위원으로 참석
 - 제재처분재검토회의와 달리 안건 상정 필요시 수시 개최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1조 제6항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기능) 부처의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재처분의 적절성에 대해서 재검토 기능 수행
 - 각 부처는 위원회가 재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최종 결정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5항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구성) 소위원장 중심으로 제재처분재검토회의별 총 7명의 위원 구성·운영
 - 소위원장 1명과 생명/의료, 인문/사회 분야, 기계/소재/ 공공/에너지 분야, ICT/융합 분야, 법률 분야, 회계 분야, 지재권/기타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
 - ※ R&D수행부처로부터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위원은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서 제외

제 3 장

연구자권익보호회의

제3장

연구자권익보호회의

연구자권익보호회의 운영절차

① 안전의 제안 및 상정 → ② 안전검토 → ③ 결과활용

- ① (안전제안 및 상정)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자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 제안 가능
- 안전이 제안되는 경우 위원장은 검토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연구자권익보호회의에 안전 상정 결정

안전검토대상 예시

- 연구자 권익보호·연구부정 방지 등에 관한 현안·이슈 토론
-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연구윤리 규정 마련 등과 같은 정책적 제안 사항
- 그 밖에 국가R&D 제재제도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 등

- ② (안전검토) 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가/부 또는 찬/반 등을 정할 때는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 ③ (결과활용)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부정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 제도 개선, 위원회 운영 개선 등에 활용
- ④ (회의진행) 민간위원 8명은 안전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안전별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
- 회의주기 : 안전상정 필요 시 수시로 개최
 - 회의참석자 : 위원장 1명, 정부위원* 5명 및 민간위원 8명

* 혁신본부(성과평가정책국장), 과기정통부(기초원천정책관), 산업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 중기부(기술혁신정책관), 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

1. 제재처분 및 연구윤리 제도개선

□ 추진배경

- 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추진·점검

□ '23년도 법령 개정

[제재처분의 공개규정 개선]

- (혁신법 제33조제7항) 공개대상이 되는 제재처분의 기준을 기존 대통령령과 동일하게 유지되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비공개 단서조항 신설
 - 제재정보 공개시, 통합정보시스템(NTIS)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 (시행령 제62조제1항) 법 개정에서 공개 예외 사유를 구체화
 - * 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계류중인 경우, ②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③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 추진배경

- 국가연구개발 제재처분 제도를 안내하는 「제재처분 가이드라인」이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필요
 - 기관의 제재처분 담당 실무자 대상으로 관련 전문적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일선 연구자가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주요 내용

- 제재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문의 사례를 보완하고, 구성 개편 등을 통해 가독성 강화
 - * ① 제도문의에 대하여 해석결과 등 답변을 '자주묻는 질문(FAQ)' 형식으로 제공, ②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의 목차 및 구성 개편
- 가이드라인(제재처분 담당 실무자 대상)과 별도로 일선 연구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자용 제재제도 설명서' 제작·배포
 - 연구자 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제재사유·처분기준 중심의 설명을 제공하고, 부정행위별로 개요, 처분 근거·결과, 유사 사례 등을 설명

2)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 추진

□ 추진배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연구윤리의 범주를 확대하고 연구기관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토록 의무 부여
 - 인간·동물연구윤리, 건전한 연구실문화 등 혁신법상 규정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 및 개정('22년 2월, 5월)
- 연구기관의 필요와 사례, 연구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 추진

□ 주요 내용

- (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절차)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의 제정 및 운영 시 참고사항을 제시
 - 부정행위의 개념과 세부유형, 조사·검증 처리절차, 판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설명
-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이해충돌 자체 규정 마련 시 연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제시
 - 연구수행시 이해충돌 관리·점검체계, 외부활동 수행 시 사전보고 및 관리체계, 창업시 직무적 이해충돌 관리, 관련 서식 등
- (연구윤리 우수사례) 기관 대상 연구윤리 전 분야에 걸친 평가 중심의 표창을 지양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기관의 자발적인 연구윤리 확립 촉진
 - 연구자 체감도·확산 가능성 등 심사기준(안)에 의거하여 5개 우수사례* 선정('22.12)
 -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캠페인, 연구윤리 Master 제도, 특수관계인 신고 시스템 및 프로세스 구축,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제작, 연구윤리교육 이수를 위한 학칙개정 및 온라인 교육 시스템 마련
- (연구보안 해외사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보안 인식 제고 및 대책 마련 등에 실질적으로 참고 가능한 연구보안 관련 주요 해외 사례들을 제시
 - 연구보안 위협사례 및 주요국(미국·일본·영국·호주)의 연구보안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사례 제시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심의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2기 중점 추진과제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전문성 제고 및 기능 고도화

- (재검토심의 합리화) 중요정보의 누락을 방지하고, 절차적 합리성 및 일관성 제고
 - 재검토요청 시 제출할 필수 및 붙임자료를 구체화하고 자료제출 프로세스 확립
 - 위원 간 의견이 상이한 경우, 위원장 주관의 다수결 결정절차* 마련
 - * 위원장 주관으로 항목별(제재 존재여부 결정, 참여제한 기간 결정, 환수금 결정, 제재부가금 결정, 기타 사항)로 순차 진행하되, 사무국에서 다수결 결과 정리
 - 소위원회별 편차 감소를 위해 기존 제재처분 사유별 재검토 심의 결과를 공유
- (재검토심의 기간 단축) 긴급처리, 선순위 처리 등 신속성 제고
 - 부처가 긴급처리 요청 시,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자료제출 지연으로 인한 심의 지연 해소를 위해 검토자료 준비 순서대로 재검토 안건 순번 재조정
- (재검토심의 만족도 제고) 재검토요청자, 부처(전문기관) 입장에서 재검토심의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 및 만족도 제고
 - 사전절차 공정성, 소명기회, 회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5점 척도로 만족도 조사
- (연구윤리 정책 조정기능 강화) 범부처 조정 역할 수행과 연구윤리 분야 정책·제도 개선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완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연구윤리 이슈를 적극 발굴 및 공유·논의

2) 제재처분 재검토회의 운영 개선

□ 주요 운영개선(안)

- (소위원회 구성 변경) 관대한 감경처분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일정기간 시범 운영
 - (기존) 연구분야 4인+전문분야 3인 → (변경) 연구분야 3인+전문분야 4인
 - 시범운영 후, 구성 변경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계속 여부 검토
- (소위원회 검증 기능 강화) 연구기관이 차질없이 검증하고 전문기관이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검증 기능 강화
 - 연구기관의 검증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에서 흠결 등 발견 시 재조사 권고
 - 전문기관이 사전 처분 시 적용한 규정·절차에 하자 등 발견 시 재조사하여 다시 처분하도록 권고

-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형평성있게 처분*하였는지 확인
 - *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과제의 수행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 (혁신법 제32조제4항)
- (재검토요청자의 진실성 확보) 재검토요청자의 거짓 증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연구자가 사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 징구
- 의견서 작성·사실확인 과정에서 거짓 소명으로 확인될 경우, 소위원회 보고 후 ‘검토 실익 없다’는 원처분 유지 의견 통보

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개선

□ 배경

- ’22년 국정감사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연구자 부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 요구
- 제1기 위원회(’21.2~’23.2) 출범 초기 재검토제도 안착에 집중하여 재검토 방향성, 제재양정의 일관성 등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

□ 주요 내용

- (운영 개선) 제1기 위원회의 운영경험과 기반을 토대로 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운영제도 혁신 등을 통해 ‘공정한 위원회’로서의 안정적 정착 추진
 - 감면 권고보다 유지 또는 재처분으로 심의하는 방향으로 운영 개선
 - 위법사항(형벌) 또는 금기사항(학생인건비)에 대한 감경 권고 중지
- (전문기관 의견청취) 제2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맞이하여 재검토 관련 심의 과정, 결과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 및 반영
 - 위원회의 소관부처(전문기관)에 대한 강압적인 분위기 지양
 - 위원회는 절차적 하자 유무 확인과 제재수위 결정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
 - 위원회 구성과 상관없이 동일 사안에 대한 일관된 결정 필요
 - 행정소송 등 문제로 재검토결과를 연구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방식의 문제
 - 재검토결과 원안유지의 경우 전문기관이 제재처분평가단 추가 개최 없이 확정권고 필요

제 4 장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제4장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제재처분 재검토 처리 절차

①재검토 접수 → ②안전준비 → ③안전배정 → ④사전검토 → ⑤회의개최 → ⑥결과통보

- ① (재검토 접수) 1주일 단위로 재검토 요청 건 접수 및 담당자 배정
- ② (안전준비) 재검토요청 접수 후 재검토요청 심의(안) 작성
 - 소관부처 심의자료 및 재검토 요청자의 이의제기 자료를 바탕으로, 증거서류를 수합하고 관련 사실 자료를 구체화하여 심의(안) 작성
 - * 오류 발견, 사실관계 확인 필요 등 추가 자료제출 요구 시 보완 요청* 하고, 자료준비 지연 시 일정변경신청서를 통해 후순위 조정¹³⁾
- ③ (안전배정) 재검토 대상안전에 대해 담당위원 섭외·배정
 - 각 회의마다 위원을 섭외한 후 안전을 담당위원 3명에게 배정
- ④ (사전검토) 준비된 안전에 대해 위원별로 사전검토 실시
 - 전체 안전을 공유하되, 안전 담당위원 3명은 각자 검토의견 제출
 - * 안전 담당위원은 '제재처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검토의견서¹⁴⁾ 작성
- ⑤ (회의개최) 위원 과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고,
 - * ①원 제재처분의 적절성 여부, ②(원처분 부적절 시)제재처분 대안 제시
 - (진행) 소관부처(전문기관) 담당자 의견청취, 제재대상자 소명 및 질의응답, 최종 토의 등 순으로 심의 실시(안전당 약 60분 소요)
 - ※ 안전별 예상 소요 시간 : ①해당부처 설명 및 질의답변 15분 → ②재검토요청자/참고인 의견진술 및 질의답변 35분 → ③최종토의 15분
- ⑥ (결과통보) 재검토 결과 및 의견서¹⁵⁾를 작성하고 위원 회람을 거친 후 정부 온나라 시스템(간사 부서)을 통해 소관부처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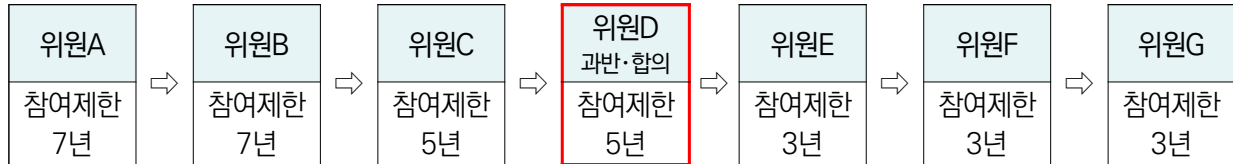
1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14조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자료 보완 요청)

14) 검토의견서는 배포된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사유와 함께 양정(유지/감경)을 명시

15) ①재검토 결과와 함께 ②제재사유의 존부, ③제재 시 양정의 적정 여부를 제시

위원 간 의견이 나뉠 때 제재처분 결정방법

- **재검토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재검토 요청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례)** 위원 7인 중 참여제한 3년 3인, 참여제한 5년 2인, 참여제한 7년 2인이 의견을 낸 경우
 - 출석위원(7인)의 과반수인 4표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가장 불리한 의견인 참여제한 7년 2인에 참여제한 5년 2인, 참여제한 3년 3인을 순차적으로 더하여 반수를 넘은 의견인 참여제한 5년으로 결정



1.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 결과

- ◆ 총 10개 부처의 127건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처리
 - ☞ 원 처분보다 감면 38건 (29.9%), 원 처분 유지 84건(67.8%), 기타 5건(3.9%)

□ 개요

- (개최현황) '23년도 제재처분재검토회의 19회 개최
 - (재검토대상) 총 10개* 부처가 요청한 재검토 127건이 처리되어
전년대비 회의 4회 ↓, 요청 부처 2개 ↓, 요청 건수 9개 ↑
 - * 산업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농진청, 복지부,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양부(재검토요청 건수 순)
 - (제재사유) 용도 외 사용(54.3%),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수행(18.9%), 연구과정 및 결과 불량(13.4%), 법령 및 협약위반(6.3%) 등의 순서로, 전년대비 '용도 외 사용'* 비중 다소 증가(49.2%→54.3%, 5.1%p ↑)
 - * 연구비 용도와 사용의 경우, 학생인건비 유용의 비중은 줄고 중소기업의 연구비 용도와사용 건이 증가
 - ※ (건수) 용도와 사용(69건), 부정한 방법(24건), 연구과정 및 결과불량(17건), 법령 및 협약위반(8건), 기타(9건)
 - ※ 학생인건비 유용('22년 30건-)'23년 4건)으로 감소, 학생인건비 유용을 제외한 연구비 용도와 사용('22년 28건-)'23년 65건) 증가
- (운영성과) 총 127건의 검토 안건 중 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소관부처 반영률은 100%로 확인
 - (부처최종반영) 부처 수용율 증가('22년 96.6%→'23년((2기 위원회) 100%, 3.4%p ↑)
 - (재검토만족도) 부처와 요청자 평균 77.6점 만족
 - ※ (조사기간) '23.1.~'23.12., (응답수) 부처 78건, 요청자 73건(서면 소명 5건 제외)

□ 결과

- (시사점) 재검토결과의 감면율 감소와 재검토결과의 부처수용율 증가는 만3년간의 연구자권익 보호위원회 활동으로 인하여 감경기준의 일관성과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짐
 - 재검토 감면율의 감소는 규정의 최대치를 처분했던 부처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재검토 결과의 기준을 참고하여 법령 상 감경기준을 적용, 원처분에서 감면처분이 증가한 영향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재검토 결과에 대한 부처의 수용율 제고
 - 재검토요청 만족도의 경우 충분한 소명기회, 공정한 심의기회 등을 제공했다고 판단되며, 향후 개선 여지가 있음
 - 연구비 사용 및 관리 규정의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비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이 필요
- (효과분석)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 재검토로 이의신청 반영가능성 제고, 범부처적인 재검토로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일관성 및 형평성 제고, 구체적인 검토결과의 투명한 제공으로 부처·재검토요청자의 수용성 및 만족도 제고

2.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 내용

□ 제1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3. 1. 5.(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3개 부처 4개 안건 심의
 - (제1호) 교육부 '부정행위(표절)'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교육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행위(위조)'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해양수산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2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3. 1. 12.(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3개 부처 4개 안건 심의
 - (제1호) 교육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환경부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미납'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미납' 관련 제재처분

□ 제3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3. 1. 26.(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3개 부처 5개 안건 심의
 - (제1호) 보건복지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행위(표절),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4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3. 2. 9.(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3개 부처 4개 안건 심의
 -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 미납'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미납'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교육부 '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 관련 제재처분

□ 제5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3. 2. 16.(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2개 부처 4개 안건 심의
 - (제1호) 교육부 '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교육부 '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중소벤처기업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중소벤처기업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6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3. 4. 13.(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3개 부처 6개 안건 심의
 -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교육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6호)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미납' 관련 제재처분

□ 제7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3. 4. 20.(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2개 부처 5개 안건 심의
 -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하거나 수행'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하거나 수행'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행위(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교육부 '부정행위(표절)' 관련 제재처분

□ 제8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3. 4. 27.(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3개 부처 6개 안건 심의
 -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농촌진흥청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교육부 '부당한 중복게재'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교육부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교육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하거나 수행' 관련 제재처분
 - (제6호) 교육부 '부정행위(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관련 제재처분

□ 제9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3. 5. 18.(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2개 부처 6개 안건 심의
 -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하거나 수행'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6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10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3. 6. 2.(금)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2개 부처 3개 안건 심의
 -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행위(위조)' 관련 제재처분

□ 제11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3. 6. 15.(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2개 부처 6개 안건 심의
 - (제1호) 교육부 '부정행위(표절)'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교육부 '부정행위(부당한 중복계재)' 관련 제재처분
 - (제6호) 교육부 '부정행위(표절)' 관련 제재처분

□ 제12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3. 7. 6.(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3개 부처 4개 안건 심의
 - (제1호) 교육부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행위(표절)'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국토교통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하거나 수행'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국토교통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3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3. 7. 27.(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2개 부처 7개 안건 심의
 -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중소벤처기업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하거나 수행' 관련 제재처분
 - (제6호) 중소벤처기업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하거나 수행' 관련 제재처분
 - (제7호) 중소벤처기업부 '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 관련 제재처분

□ 제14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3. 8. 10.(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2개 부처 5개 안건 심의
 -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산업통상자원부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중소벤처기업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하거나 수행' 관련 제재처분

□ 제15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3. 9. 7.(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3개 부처 5개 안건 심의
 -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농림축산식품부 '환수금 미납'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농촌진흥청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농촌진흥청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농촌진흥청 '용도와 사용 및 연구건전성 저해 행위' 관련 제재처분

□ 제16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3. 10. 19.(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3개 부처 4개 안건 심의
 - (제1호) 보건복지부 '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산업통상자원부 '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행위(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제재처분

□ 제17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3. 11. 2.(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1개 부처 23개 안건 심의
 -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6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7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8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9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0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1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2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3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4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5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6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7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8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9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20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21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22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23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8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3. 11. 16.(목)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1개 부처 22개 안건 심의
 -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5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6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7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8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9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0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1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2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3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4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5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6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7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8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9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20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21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22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비 용도와 사용’ 관련 제재처분

□ 제19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 일시 : '23. 12. 1.(금) 13: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내용 : 3개 부처 4개 안건 심의
 - (제1호) 중소벤처기업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하거나 수행' 관련 제재처분
 - (제2호) 중소벤처기업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하거나 수행' 관련 제재처분
 - (제3호) 보건복지부 '부정행위(위조·변조)' 관련 제재처분
 - (제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

제 5 장

결 론

제5장 결 론

1. 주요 연구성과

-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운영
 - 제2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2023.3.30.)에서 비과학기술분야(법률·회계·지재권 분야등 회사) 및 여성 비중을 확대하여 공정성 제고
 -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윤리 및 부정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안건 수립, 검토 및 심의 업무 지원
 - 회의 사전 준비 및 회의 현장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
 - 회의 안건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수립 및 추진 지원
 - 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국내·외 사례 및 다양한 전문 분야의 시각이 반영된 정책 및 제도 제안
- 제재처분재검토회의 개최·운영
 - 부처 제재처분의 적절성 재검토를 위한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의 제반 사항 및 주요 사항 사전검토, 상정 안건의 심의 활동을 지원
 - 재검토요청자의 재검토요청서, 부처(전문기관) 처분 내용을 바탕으로 재검토요청별 심의자료(안건) 작성
 - 법령에 근거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검토심의를 위해 감경·가중기준을 고찰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도입
 - 부처와 재검토요청자 측을 대상으로 재검토 만족도 실시하고 피드백
 - 회의 안건 심의 결과에 따른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 부처(전문기관)의 후속조치 지원
 - 범부처적인 제재처분 재검토를 통해 동일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제재처분 기준 제시의 토대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개선사항 발굴
 - 연구현장 및 유관기관 대응 등을 통해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률전문가 및 실무전문가들과의 검토를 통해 법령 개정, 실무 가이드라인 등 체계 고도화

2. 연구결과의 활용 및 발전방향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연구의 의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권익보호 증진에 기여
- 부처 간 제재처분에 대한 공통된 기준 및 절차의 공유 및 확산에 기여
- 연구현장의 윤리 의식 제고와 함께 연구자 권익보호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

□ 연구결과 활용 가능성

- 연구자권익보호회의 및 제재처분재검토회의 구성 및 운영 결과를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과 공유하여 제재처분 절차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결과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해 축적된 자료는 향후 연구자 권익보호 관련 정책 수립에 장기적 관점으로 분석 및 활용

□ 연구결과의 한계 및 발전방향

- 현재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구제에 집중하고 있으나 향후 꾸준한 현장 의견 수렴 및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자 권익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함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의 지속적인 개선 및 전문지식의 축적을 통해 관련 업무의 효율화 및 연구자 권익보호에 기여

부 록

부록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1기 운영실적 및 주요성과

□ 개요

- (개요) '21.2.22~'23.2.21까지 제재처분재검토회의 48회를 개최하여 총 12개* 부처에서 요청한 재검토 총 230개 안전 심의·의결

* 과기정통부, 교육부, 국토부, 농식품부, 농진청, 문체부, 복지부, 산업부, 중기부,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

구분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중기부	복지부	농진청	환경부	기타	합계
건수	1차년	44	18	18	-	10	6	2	3*	101
	2차년	36	39	23	13	2	4	3	9**	129
	계	80	57	41	13	12	10	5	12*	230
비율(%)		34.8	24.8	17.8	5.7	5.2	4.3	2.2	5.2	100.0

* 농식품부(1), 해수부(2) **국토부(2), 농식품부(1), 문체부(2), 해수부(2), 행안부(2)

- (주요결과) 총 230개의 요청 안전 중 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소관부처 반영률은 94.4%로 확인

□ 주요내용

- (부처별) 총 12개* 부처에서 요청한 재검토 총 230개 안전이 심의
 - * 과기정통부, 교육부, 국토부, 농식품부, 농진청, 문체부, 복지부, 산업부, 중기부,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
- (제재사유별) 용도 외 사용(50.4%), 부정확한 방법으로 연구수행(17.0%), 연구과정·결과불량(14.4%), 협약위반(7.4%), 회수금미납(5.2%) 요청 순

구분	용도외 사용	부정확한 방법	연구결과불량	협약위반	회수금미납	수행포기	그외	합계
건수	116	39	33	17	12	10	3*	230
비율(%)	50.4	17.0	14.4	7.4	5.2	4.3	1.3	100.0

* 기술료미납(2), 납부연장(1)

- (부처최종결정) 부처에서 확정통보한 179건 중 수용 94.4%(169건, 일부반영 17건 포함), 미반영 5.6%(10건, 재조사 또는 법원판단 사유)

□ 시사점 및 효과분석

- (시사점) 재검토 요청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1차년 101건 → 2차년 129건)되는 등 위원회 역할·기능이 성공적으로 안착
 - 최근 감면율 감소는 원처분에서 감면이 증가한 영향으로, 부처가 경직성 처분에서 탈피하는 긍정적 효과로 분석

- 소관부처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재검토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미반영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등 부처 수용율이 제고
 - ※ 재검토결과에 대한 부처 수용율도 증가: 1차년 92.1% → 2차년 97.4%
- (효과분석)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 재검토로 이의신청 반영가능성 제고, 범부처적인 재검토로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일관성 및 형평성 제고, 구체적인 검토결과의 투명한 제공으로 부처·재검토요청자의 수용성 제고

부록 2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연도별 운영실적

1. 2021년도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 결과

- (개최현황) 총 20회 개최(8개 부처, 91건의 재검토요청 처리)
- (제재사유) 용도 외 사용이 다수*이며,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수행**, 연구 불량 등 순서

*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55건)에 학생인건비 유용(23건) 포함

**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수행(14건)에 위조·변조·표절(11건) 포함

제제사유 ¹⁶⁾	과기부	산업부	교육부	복지부	농진청	환경부	해수부	농식품부	계
연구 과정 및 결과 불량	1	7					1		9
법령 및 협약 위반	2	1	3			1			7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수행	8		3	2	1				14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26	9	8	7	5				55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1		1	1				1	4
기술료 및 회수금 미납	2								2
합계	40	17	15	10	6	1	1	1	91

2. 2022년도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 결과

- (개최현황) 총 23회 개최(12개 부처, 118건의 재검토요청 처리)
- (제재사유)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이 다수이며,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수행**, 연구 불량 등 순서

*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58건)에 학생인건비 유용(30건) 포함

**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수행(22건)에 위조·변조·표절(21건) 포함

제제사유 ¹⁷⁾	과기부	산업부	교육부	중기부	농진청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기타 ¹⁸⁾	합계
연구 과정 및 결과 불량		13	2		2						17
법령 및 협약 위반	1	3					2			1	7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수행	11		7		1	1		1		1	22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23	20	11		1				2	1	58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2					2		1			5
기술료 및 회수금 미납		1		8							9
합계	37	37	20	8	4	3	2	2	2	3	118

1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1항 각호를 활용하여 구분(1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호: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호: 31조1항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호: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 수행 포기 5호: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미납한 경우, 6호: 연구개발비 회수금액 미납)

3. 2023년도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 현황

- (개최현황) 총 19회 개최(10개 부처, 127건의 재검토요청 처리)
- (제재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수행*과 연구개발비 용도외사용**이 다수이며, 그 외 연구 과정 및 결과 불량 순서
 - *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수행(24건)에 위조·변조·표절(14건) 포함
 - **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69건)에 학생인건비 유용(4건) 포함

제재사유 ¹⁹⁾	과기부	산업부	교육부	중기부	농진청	환경부	국토부	복지부	기타 ²⁰⁾	합계
연구 과정 및 결과 불량		10	1	2	3			1		17
법령 및 협약 위반		1	5	1				1		8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수행	8	1	7	5			1	1	1	24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12	52	2		1		1		1	69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1		1			1				3
기술료 및 회수금 미납				4					2	6
합계	21	64	16	12	4	1	2	3	4	127

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1항 각호를 활용하여 구분(1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호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호: 31조1항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호: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 수행 포기 5호: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미납한 경우, 6호: 연구개발비 회수금액 미납)

18) 복지부(1), 농식품부(1), 해양부(1)

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1항 각호를 활용하여 구분(1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호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호: 31조1항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호: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 수행 포기 5호: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미납한 경우, 6호: 연구개발비 회수금액 미납)

20) 농식품부(3), 해양부(1)

부록 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관련 법령 및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8645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 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부정행위의 세부기준,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조치·보고의 내용·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2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6., 2023. 3. 21.>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⑧ 평가단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항에 따른 검토의 절차, 제7항에 따른 등록 및 공개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6.>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③ 제1항에 따른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 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6.>

부칙 <제19235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결정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899호, 2023. 12. 5., 타법개정]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로서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부정

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⑧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⑨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게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 9. 19.>

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 ②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28.>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2. 2. 28.]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2022. 12. 6.>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관리 등) 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 2. 28.>

②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 2. 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자체지침을 마련·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 2. 28.>

④ 과학기술 분야 외의 연구개발과제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제공하거나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해야 한다. <신설 2022. 2. 28.>

[제목개정 2022. 2. 28.]

부칙 <제33899호, 2023. 12.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2)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3)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참여제한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으로 한정한다.
-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감경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2년
2)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2년
4)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5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5)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3호	3년 이내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 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나)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2년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2년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사)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2년
6)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2년

나.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
1)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내
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년 초과 4년 이내
3)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년 초과 5년 이내
4)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5년 초과 7년 이내
5)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년 초과 10년 이내

[참고]

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중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한다.

-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2)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 중 가장 큰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으로 한정한다.
-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감경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나)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2조제1항제3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5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라)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 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0)

나. 연구책임자·연구자·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소속임직원에 대한 제재부가금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나)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 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3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재부가금 부과액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 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 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50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9호, 2022. 12.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계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30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변경 또는 중단 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61조제7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① 누구든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제보(이하 “익명제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내용
2. 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
3.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5.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6. 제보한 부정행위 검증·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의 제보를 접수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보를 접수하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보 등을 이관해야 한다.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를 받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부정행위 검증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
2. 부정행위 검증 기간
3. 부정행위 검증 결과 및 판단 이유를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
4. 부정행위 검증 결과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

[전문개정 2022. 12. 16.]

부칙 〈제99호, 2022. 1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공모 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규정 마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마련·운영 중인 자체규정에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시행 2021. 2.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42호, 2021. 2. 2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에 관한 사항
2. 제재처분의 적절성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61조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다음 각 호 회의의 위원장이 된다.

1.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에 관한 회의(이하 “연구자권익보호회의”라 한다)
2.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회의(이하 “제재처분재검토회의”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 관하여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재검토회의마다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영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2. 영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위원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영 제6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장 연구자권익보호회의

제6조(검토사항의 제안·발굴) ① 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1호, 제3호,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 이를 연구자권익보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7조(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구성) ①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 하는 검토사항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7명 이내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개회 전에 연구자권익 보호회의의 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회의에 상정할 자료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자권익보호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개회를 지원하고,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위원회 및 위원회 회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제9조(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구성) ①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 관한 직무를 대행하게 한 위원이 된다.

②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영 제6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고르게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운영) ①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개회 전에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회의에 상정할 자료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재처분재검토회의는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검토요청자, 이해관계인, 관련전문가 등이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증거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감정·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일정 통지) ① 위원회는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 사항의 소관 중앙 행정기관 및 재검토요청자에게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개회 일시 및 장소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보받은 재검토요청자는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일시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일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개최 일시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최 일시의 연기 여부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연기로 소요된 기간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재검토 요청의 취하) 재검토요청자는 제재처분의 적절성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에 관한 위원회의 검토결과가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는 요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 범위) 위원회는 재검토 요청의 대상이 된 제재처분 및 그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자료 보완 요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0조 제3항에 따른 증거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추가조사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2. 새로운 사실관계, 검토가 누락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제15조(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에 오기, 착오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고 재검토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에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서약) 위원회 위원은 법 제39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장관에게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검토 자료의 준비, 작성, 배부 및 결과 보고, 재검토 요청의견에 대한 검토에 필요한 사실조사 등 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수당 등) 장관은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의견을 진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회의 참석 수당, 안전 검토 수당 등을 포함한다),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기관의 지정)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의 동향 등 조사·분석 및 제도개선, 정책 개발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42호, 2021.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4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양식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4쪽 중 1쪽)

재검토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접수번호란과 접수일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출인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대표자 ☐ 관리인 ☐ 선정대표자 ☐ 대리인 (해당 시 작성)	성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소속			
	전화번호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사전통지 문서명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0000. 00. 00.			
증거 서류				
재검토 희망 기관(택일)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소관 중앙행정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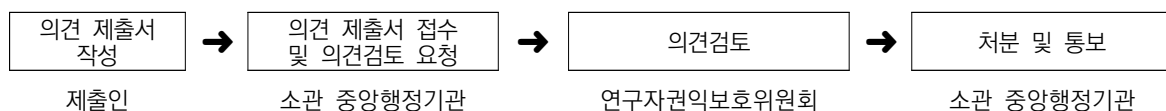
제출인

(인 또는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별지), 그 밖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4쪽 중 2쪽)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제출인
 - 1) 성명 또는 기관명: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2) 주소: 제출인의 거주지(주택, 직장 모두 가능) 또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 3)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제출인의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해당 시 작성)
 - 1) 대표자: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일 경우 기관의 대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 2) 관리인: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이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 3)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제출인이 공동으로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4) 대리인: 제출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5.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가 제출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합니다.
6. 증거 서류: 재검토 요청 의견 및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작성합니다.
7. 재검토 희망 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자가 재검토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가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에 소속한 연구개발기관명 또는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기간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해당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 1) 전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2) 해당 단계: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종류를 선택하고, 참여제한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기간을,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9.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이에 대해 적용된 제재사유, 이에 따라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10.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혹은 사건에 대한 내용 및 발생 경위를 기재합니다.
11.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요청 사항을 기재합니다.
12. 의견 제출사유: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부록 5

부처제출자료(각 부처→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1

재검토 요청 접수 자료 양식

1. 대상과제 개요

세부 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선정 년도	총연구개발기간	총연구개발비 (천원)

2. 원제재처분 내용 및 제재사유

1) 원제재처분(종합)

※ 개인(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대표, 연구지원인력, 직원 등)과 기관(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나누어 표기

제재대상 (개인/기관)	제재처분		
	참여제한(년)	환수금(원)	제재부가금(원)

2) 원제재처분(세부)

대상과제		제재사유	제재조치		
과제명(과제번호)	제재대상		참여제한 (년)	환수금 (원)	제재부가금 (원)

3) 제재사유 : 제재사유 명칭 표기

- 제재사유와 근거법령의 간략한 서술

3. 제재근거 및 산출식

※ 근거법령은 해당 심의의 토대가 된 시점 기준의 법령으로 기입

- (참여제한) 참여제한 대상(개인/기관) 및 사유의 간략한 설명
 - 근거법령 : 제재 부과 근거 법령/규정 및 관련 조항
 - 산출근거 및 산출식 : 제재 산출 근거 조항의 상세 문구/표 및 산출식
 - 감경사유 : 근거 조항보다 낮은 제재를 부과한 경우 이유/근거
- (환수금) 환수금 부과 대상(개인/기관) 및 사유의 간략한 설명
 - 근거법령 : 제재 부과 근거 법령/규정 및 관련 조항
 - 산출근거 및 산출식 : 제재 산출 근거 조항의 상세 문구/표 및 산출식
 - 감경사유 : 근거 조항보다 낮은 제재를 부과한 경우 이유/근거
- (제재부가금)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개인/기관) 및 사유의 간략한 설명
 - 근거법령 : 제재 부과 근거 법령/규정 및 관련 조항
 - 산출근거 및 산출식 : 제재 산출 근거 조항의 상세 문구/표 및 산출식
 - 감경사유 : 근거 조항보다 낮은 제재를 부과한 경우 이유/근거

4. 추진경과

- 2020.01.01. : 일자별 경과 및 주요 결정/확인(발견) 사항

※ 필요 시 표/설명박스 등을 활용하여 상세 설명

5. 요청자 의견에 대한 부처측 입장

- 재검토요청서의 재검토요청자 주장에 대한 부처측 의견(1p 이내)

6. 부처 및 전문기관 담당자 정보

성명	소속	이메일	전화번호	직위(직급)

2 재검토 요청 접수 시 관련 붙임자료

1. 재검토 요청 공문(부처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2. 재검토요청자가 제출한 요청서 및 관련 붙임(별첨) 자료 일체
3.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및 결과 자료
 - * 반드시 한글 파일로 제출 (심의결과 등 서명포함 화일은 PDF 제출 가능)
4. 사전통지 공문(사전통지 내용 포함)
5. 법원(형사 및 행정 소송 등) 판결문, 검찰 기소자료 등 관련 자료
6. 적용 법령 및 규정 파일 일체
 - * 심의의 토대가 된 시점 기준의 법령 및 규정
7. 협약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 * 심의의 토대가 된 시점 기준
8. 연구부정행위의 경우 연구기관 자체연구윤리위원회 최종보고서
9. 그 외 적발경위, 추진경과와 관련된 제재처분 관련 자료 일체
 - * 자체감사 실시한 경우 해당 감사결과 자료, 연구결과 불량인 경우 평가 결과보고서 등(전문 공유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내용만 일부 발췌하여 경과에 작성요청)

※ 붙임자료는 가능한 한 한글 파일 제출 요청

◇ 제재처분 재검토회의에서는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검토·심의하므로 가능한 한 사전통보시(제재처분시) 검토 자료 일체 제출을 요청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규정 제14조) 위원회는 검토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증거물 또는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각 부처에서 최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사전처분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 검토 결과가 '제시된 근거자료 부족'의 이유로 처분 감경 혹은 면제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

3 재검토 요청 접수 자료 (예시)

1. 대상과제 개요

세부 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선정 년도	총연구개발기간	총연구개발비 (천원)
첨단기술개발사업	표적치료제를 이용한 백신개발	홍길동 (울도대학교)	2020	2020.1.1.~ 2020.12.31.	500,000

2. 원제재처분 내용 및 제재사유

1) 원제재처분(종합)

※ 개인(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대표, 연구지원인력, 직원 등)과 기관(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으로 나누어 표기

제재대상 (개인/기관)	제재처분		
	참여제한(년)	환수금(원)	제재부가금(원)
홍길동(연구책임자)	5년		5,000,000
홍길현(참여연구원)	3년		
울도대학교산학협력단(주관기관)		32,160,000	

2) 원제재처분(세부)

대상과제		제재사유	제재조치		
과제명 (과제번호)	제재대상		참여제한 (년)	환수금 (원)	제재부가금 (원)
면역체계 작용 기초연구(2020-ABC)	홍길동 (연구책임자)	용도외사용	2년		2,000,000
면역체계 작용 기초연구(2020-ABC)	홍길현 (참여연구원)	용도외사용	3년		
면역체계 작용 기초연구(2020-ABC)	울도대학교 (주관기관)	용도외사용		32,160,000	
(위탁) 면역체계 작용 기초연구(2020-ABK)	홍길동 (연구책임자)	연구부정	3년		3,000,000

3) 제재사유 : 정당한 사유 없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포기

- 기술이전에 의한 자의중단을 연구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과학기술기본법('19년.8.27 시행) 제11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9.9.1. 시행)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따라 제재를 부과함

3. 제재근거 및 산출식

- (참여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여 연구책임자(홍길동)에게 참여제한 3년을 부과함
- 근거법령 :
 - ① 과학기술기본법('19.8.27. 시행) 제11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9.9.1. 시행)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근거1. 과학기술기본법 ('19.8.27. 시행)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근거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9.9.1. 시행)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4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별표 4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2. 참여제한 기간

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4호의2·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년

- (환수금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여 연구기관(울도대학교)에게 환수금 5천만 원을 부과함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9.9.1. 시행)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⑪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9. 26., 2014. 11. 28., 2015. 12. 22.>

[별표 5] <개정 2016. 7. 22.>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제11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 산출근거 및 산출식 : 5억 원(해당 연도의 출연금) * 0.1 = 5천만 원
- 감경사유 : 조사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해당금액을 사업비 계정에 회복하여 연구비로 사용한 점을 고려함
- (환수금2)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 사용한 연구책임자(홍길현)에게 환수금 66,720,000원을 부과함
 - 산출근거 및 산출식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별표5 사유별 사업비 환수세부기준

세부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주관기관)	연구기간	환수금	산출 근거
중견연구자지원 사업	(위탁) 면역체계 작용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기초연구	홍길현 (울도연구원)	2011.3.1~ 2012.2.29	14,880,0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근거1)
			2012.3.1~ 2013.2.28	17,280,0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근거2)
	(세부) 면역체계 작용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기초연구	홍길현 (울도연구원)	2013.3.1~ 2014.2.28	17,280,0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5 (근거3)
			2014.3.1~ 2015.2.28	17,280,0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5 (근거4)

* 용도외 사용금액 전액 / **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제재부가금)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여 연구기관(울도대학교)에 제재
부가금 1천만 원을 부과함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9.9.1. 시행)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7조의4 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1억원 미만	20%

- 산출근거 및 산출식 : 5천만 원(용도외 사용금액) * 0.1 = 5백만 원
- 감경사유 :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성실성을 인정되며, 최종평가 의견 및 논문성과 등이 우수함

4. 추진경과

- 2020.01.01. :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보자 경찰 신고(울도경찰서)
- 2020.01.03. :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보 접수(울도대학교)
- 2020.01.05. : 연구부정행위 관련 자체 감사 시작(울도대학교)
- 2020.02.05. : 연구부정행위 관련 자체 감사 종료(울도대학교)

울도대학교 자체감사 결과(울도대학 법무감사팀)

- 연구책임자는 자신의 실험실 랩장으로 하여금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된 연구과제의 인건비, 장학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
- 연구책임자의 지시를 받은 랩장이 특정 학생을 따로 불러 반납 금액을 알려주고, 학생이 자신의 인건비 수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랩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매월 인건비를 편취
- 편취된 금액은 랩장이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회의비, PC방 이용료, 택시요금 등 실험실 전체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연구실 및 실험실의 집기류 구매, 교수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 랩장을 포함한 재학생 대부분은 인건비 공동관리는 물론 이를 확인해줄 자신의 인건비 수급 계좌의 거래내역 제출에 불응하였으며, 졸업생은 전화 수신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협조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인건비 공동관리 시작 시점이나 대상 학생, 전체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
- 신고자를 제외한 3명의 학생이 인건비 공동관리 사실을 인정

- 2020.02.10. : 연구부정행위 확인 통보(울도대학교 → 과학재단)
- 2020.01.12. : 연구부정행위 관련 검찰 이관(울도남부지검)
- 2020.01.13. : 연구부정행위 관련 검찰 조사 시작(울도남부지검)
- 2020.02.14. : 연구부정행위 관련 자료 제출 요청(과학재단)
- 2020.02.16. : 연구부정행위 관련 자료 제출(울도대학교)
- 2020.02.17. : 연구부정행위 관련 조사 시작(과학재단)
- 2020.02.30. : 연구부정행위 관련 조사 종료(과학재단 감사팀)

과학재단 감사팀 조사내용

1) 사실관계 조사개요

- (가) 조사일시 : 2020년
 (나) 조사장소 : 울도대학교
 (다) 조사인력 : 과학재단 감사팀

2) 사실관계 조사결과(요약)

- 홍길동 교수는 과학기술진흥연구사업 및 타 정부 R&D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본인 지도학생에게 지급된 연구장학금 등 총 500,689,178원을 편취하였음

3) 금액 확인결과(요약)

- 과학재단이 지원한 연구비 중 확인된 용도외 집행된 금액 중 과학기술진흥연구사업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금액은 총 162,170,000원임

- 2020.3.28. : 제15차 과학재단 연구관리위원회 심의

심의사유	제재여부	심의결과
연구비 용도외 집행	필요	- 참여제한: 연구책임자 3년 - 출연금환수: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10% 해당 금액(50,000,000원) - 제재부가금: 용도외 사용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10,000,000)

- 2020.03.29. : 제6회 과학재단 제재처분평가단 처분
- 처분 결과 : 참여제한 3년, 용도외 사용 금액 전액에 대한 환수 (50,000,000)및 제재부가금 (10,000,000) 부과
- 2020.04.01. : 과학재단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결과 통보
- 2020.04.05. : 과학재단 제재처분평가단 심의에 대한 연구책임자 기관 이의신청
- 2020.04.15. : 과학재단의 이의신청 기각 및 제제결과 최종 통보

- 2018.11.30. : 울도지방법원 1심 판결(사기, 징역1년)

울도지방법원 판결문 요지

- 연구책임자의 지시를 받은 랩장이 특정 학생을 따로 불러 반납 금액을 알려주고, 학생이 자신의 인건비 수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랩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매월 인건비를 편취
- 편취된 금액은 랩장이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회의비, PC방 이용료, 택시요금 등 실험실 전체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연구실 및 실험실의 집기류 구매, 교수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 랩장을 포함한 재학생 대부분은 인건비 공동관리는 물론 이를 확인해줄 자신의 인건비 수급 계좌의 거래내역 제출에 불응하였으며, 졸업생은 전화 수신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협조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인건비 공동관리 시작 시점이나 대상 학생, 전체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
- 신고자를 제외한 3명의 학생이 인건비 공동관리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 선고함

- 2020.06.25. : 울도고등법원의 2심 판결(사기, 징역 6월)
- 2020.11.26. : 대법원 판결(항소 기각)
- 2020.12.31. : 연구책임자 홍길동 제재처분재검토 요청(연구책임자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5. 요청자 의견에 대한 부처측 입장

- 학생인건비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연구책임자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며, 감경요소가 없음
 - 본인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구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

6. 부처 및 관리기관 담당자 정보

성명	소속	이메일	전화번호	직위(직급)
홍판서	울도연구부	aab@korea.kr	044-234-2323 010-6789-1122	사무관
홍길현	울도연구평가원	ebc@sistek.re.kr	043-750-2000 010-1234-5678	책임연구원
홍길동	울도연구평가원	sss@sistek.re.kr	043-750-3000 010-3333-1234	선임연구원

부록 6 체크리스트 (위원용)

① 법에 따른 부정행위 여부

↓ 부정행위 맞음

② 부정행위자 여부

↓ 부정행위자 맞음

③ 절차상 하자 여부

↓ 하자 없음

④ 재량권 일탈 여부

사안의 중대성	고의성	위반 횟수	과제 진행	조사 협조	위반 정도
중함	고의	다수	진행	방해	중함 (범죄)
경험	과실	중 경 (부주의)	초기 미진행	미협조 성실히 협조	경미

* 빨간색 : 가중요소 (예시 학생인건비)

☐ (부정행위 판단) 법조항에 따른 부정행위 유형 결정

(예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5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⑦번으로 이동

☐ (책임의 당사자임) 부정행위자의 구체적인 태양

(예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자(교사자, 책임자 포함)에 해당

☐ (당사자가 아닌 경우) ⑦번으로 이동

☐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경우) ④번으로 이동

☐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⑧번으로 이동

☐ (부처가 재량권을 일탈) ⑤번으로 이동

* 감경요소(파란색)가 있으나, 재량권이 적용되어 있지 않음

☐ (부처가 재량권을 감안) ⑥번으로 이동

* 제재처분평가단에 감경요소(파란색)가 반영되어 있음

* 감경요소가 없어 재량권을 적용할 수 없음

* 가중요소(빨간색)가 있어 감경권고가 부적절함

⑤ 감경(수준) 결정

☐ 감경 수준, 원처분에 미반영된 감경사유

(예시) 최고한도의 1/2 감경,
의도하지 않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 과제가 진행되지 않아 피해 미발생,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함,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에서 경미함
연구개발기관이 검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

제
재
결
정

⑥ 유지 결정

☐ 유지 사유

(예시) 재검토요청자의 잘못이 인정됨
(또는) 부처의 처분이 과하지 않음

⑦ 면제 결정

☐ 면제 사유

(예시) 법에 규정한 부정행위가 아님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만, 동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자가 아니므로 책임을 묻기 어려움

⑧ 재조사 권고

☐ 재조사 권고 사유

(예시) 규정에 따른 본조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음

부록 7 분야별 권익보호 사례

1. 교권 보호사례²¹⁾

□ 교권의 개념

- 국가 수준에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교원의 교육권과 교원의 권위’로 설명²²⁾.
- 시·도교육청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법률에서 보장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권한과 권리’로 정의함.
 -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²³⁾», 「강원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²⁴⁾», 「충청남도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²⁵⁾」)

□ 교권의 종류

- 교권의 종류²⁶⁾는 교육자의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있음.
 - 교육자로서의 권리는 교사로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교원의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 교육과정 편성권(「초·중등교육법」 제23조), 교재 채택 및 선정권(「초·중등교육법」 제29조), 교육 내용·방법 결정권(「초·중등교육법」 제20조), 평가권(「초·중등교육법」 제9조), 학생 지도 및 징계권(「초·중등교육법」 제18조) 등
 -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는 신분·지위 보장, 쟁송 제기권, 불체포 특권, 교원단체·노동조합 활동권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보장되는 교원의 지위·신분적 권리 보장을 포함
 -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사 표현의 자유, 재판청구권, 노동권 등 교원이라는 이유로 제한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의미함

21) 정리 : 한국교육개발원 도재우 연구위원

22) 「교육학용어사전」

23) 교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을 말함

24) 교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포함하여 교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말함

25) 교권이란 교원의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교원지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활동의 권한과 권리를 말함

26) 출처: 전라북도교육청, 교권 보호 매뉴얼, 2018:3-4

□ 교권관련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법으로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됨
- 이 법은 기존의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법제명을 변경(2016년 2월) 하였으며, 제1조(목적) 에서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할 것을 천명하고 있음

〈교권 관련 법령 주요 조항〉

법령	주요 조항
헌법	제31조 4항(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3조(보호자), 제14조(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 보장),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제49조(고충 처리)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제60조(교원의 불체포 특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교원지위법’	제1조(목적),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약),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등 대부분 조항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 교권 보호 정책

- 교권 신장 방안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발 및 배포 등이 있음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항²⁷⁾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
-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조정(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등),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함(「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항²⁸⁾).

27)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8)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특별휴가,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도 함께 수행(「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및 2항29)).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치유·회복·복귀 지원, 교육활동 침해 피해 학교 및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법률 상담, 교육활동 보호 자료 개발, 교육활동 보호 예방 연수,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외에 교직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교원의 교육력 회복 지원 등을 수행(「교원지위법」 제17조 제1항30)).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매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음
- 고충심사청구, 교원소청심사청구, 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징계 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 및 부당한 처우,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관한 문제, 직장 괴롭힘, 갑질 피해 등의 사안에 대해 처리하고 있음

2. 학생인권 보호사례³¹⁾

□ 학생인권의 개념

- 시·도(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로 정의
- 학생인권 관련 연구들에서는 “학생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성별이나 성적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존중받고 누려야 할 권리(유성상, 2011; 유주영, 2022)”, “학생이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 및 사회적 지위권이 포함된 개념으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학생으로서 교육받을 권리 일체를 포함(김달영 외, 2014)”한다고 정의

29) (중략)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30)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31) 정리 : 한국교육개발원 김수진 박사후연구원

□ 학생인권의 종류

- 시·도(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학생인권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생 인권의 종류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고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학생인권 종류〉

종류 ³²⁾	주요 내용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국가/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신체의 자유	- 학교 내외 및 사이버 공간 등에서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 -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 금지, 강제노동 금지 - 안전에 대한 권리(전북, 제주)
교육에 대한 권리, 학습할 권리	- 학습에 관한 권리: 학습권 침해, 교육과정 자의적 운영 등 강요 금지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의 자유 - 휴식을 취할 권리(전북은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에 포함) -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전북만 해당)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복장, 두발 등 용모 관련 - 사생활의 자유: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개인적인 기록물 열람 등 금지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정보 열람 등에 관한 권리: 학교 기록 열람,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 공개 청구 등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³³⁾	- 양심·종교의 자유: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또는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등 금지 - 의사 표현의 자유: 언론활동, 홈페이지 등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참여권	- 자치활동(동아리, 학생회 및 학생자치 조직 등)의 권리 -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개정에 참여할 권리 -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서울, 전북) - 선거권 등(경기만 해당)
복지에 관한 권리, 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교육복지권	-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학생복지의 진흥에 관한 권리: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상담, 지원 -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서울은 교육에 대한 권리에 포함) - 급식에 대한 권리 - 건강에 관한 권리: 아플 때 적절한 치료, 편리한 보건시설 이용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징계는 적법절차(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상담 조사 및 청구권: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등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소수 학생(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32) 충남은 타 시·도와 다른 구성으로 학생인권을 명시(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33) 광주와 충남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와 '표현과 집회의 자유' 구분함

□ 학생인권 관련 법령

- 「교육기본법」³⁴⁾과 「초·중등교육법」³⁵⁾이 있으며, 각 시·도 수준에서는 학생인권 조례를 규정-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면서 학생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치법규상 근거가 마련(김병주·장귀덕, 2022: 7)
- 이후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2020년 충남, 2021년 제주 순으로 제정 및 시행 중에 있음

〈시·도별 학생인권 조례 구성〉

시·도	학생인권 조례 구성
경기도	총칙(목적, 정의, 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책무), 학생의 인권, 학생인권의 진흥(인권교육, 학생인권 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광주광역시	총칙(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인권증진계획 등(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공청회 등, 인권활동 지원, 홍보), 학생의 인권, 학생인권회, 학생의회, 인권교육 및 연수, 학생인권정책 및 구제체계
서울특별시	총칙(목적, 정의,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책무), 학생인권,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체계(학생인권교육과 홍보,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 학생인권종합계획),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전라북도	총칙(목적, 정의, 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책임과 의무), 학생의 인권, 학생인권의 진흥(인권교육, 인권실천계획 등, 소수 학생의 권리 보호, 학원 및 대안학교 등에서의 인권보장,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
충청남도	총칙(목적, 정의,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책무), 학생의 인권,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학생 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절차 등,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주특별자치도	총칙(목적, 정의, 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책임과 의무), 학생의 인권, 학생인권의 진흥(인권교육, 인권실천계획 등,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

□ 학생인권 보호정책

- 시·도 학생인권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인권 신장 방안은 인권교육,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운영, 학생참여위원회/학생의회 운영,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인권교육센터 설치, 학생인권 영향 평가 실시 등이 있음

34)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35)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인권교육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학생 인권교육은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 노동인권, 스포츠인권, 성인지 교육을 포함토록 하고 있음
 - 교직원 인권교육은 교육청 주관 모든 자격연수에서 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
 - 보호자교육은 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토록 규정
-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교육청 인권계획 심의 및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 인권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의견 권고, 학생인권영향평가³⁶⁾ 요구, 학생인권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및 개선 권고, 중대한 학생인권 침해 및 차별 사건 관련 사항 자문 및 심의, 그 외 학생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
- 학생참여위원회 혹은 학생의회는 학생인권 관련 교육정책, 조례 개정, 학생인권실태조사, 학생 인권실천계획, 그 외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 사항 등에 대한 학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로서 공개모집을 통해 학생 모집 후 추첨을 통해 선발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정 및 조치 권고, 실태조사 및 정책·지침 등의 연구·개발,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등 수행
 -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구제신청가능함.
- 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개선, 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예방조치 등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 자료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교육 및 홍보,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 협력, 그 외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수행

36) 학생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 제시한다.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 권고할 수 있다.

3. 장애인 권리 보호 사례³⁷⁾

□ 장애인 권리 개념 및 국내 법령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근거로 외모 및 신체, 정신적 상태에 상관없이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향유하고 각기 행복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대전제 하에 장애인의 권리문제가 다루어짐(위계출, 2012)
- 헌법상 장애인 권리 보호관련 조항은 아래 표와 같음.

〈헌법상 장애인 권리 보호 관련 조항〉

조항	내용	성격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평등권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4조 제5항	신체 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동법 제1조)으로 제정
- 이는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는 법(국가인권위원회해설집 발간위원회, 2005)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시정기구로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조경진, 2014)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례조사와 구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범주에 장애인도 포함.
- 동 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는 장애인차별의 조사 → 합의의 권고 → 구제조치 등의 권고 → 고발 및 징계권고 →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 요청(동법 제19조) 순으로 진행.
- 동 위원회 권한은 관계 국가행정기관 등과의 협의 요청권(동법 제20조), 정부보고서 작성 시 의견청취권(제21조), 자료제출권(제22조) 청문권(제23조), 방문조사권(제24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권(제25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권(제28조) 등 (정영진, 2020)

37) 정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희진 연구원

□ 장애인 권리보호 정책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중심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그치다가 2015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중앙과 지역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고, 2014년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장애인 권리 보호 활동 시작함
- 현재 장애인 권리보호에 관하여 하나의 법령이 아닌,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법」, 조례 등 여러 법령에서 개별적·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마다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대표적임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 수행에 발달장애인 채용 가능³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명칭이 다르고 구성이나 역할 등도 차이가 있음. 대부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성격은 민간기구로 볼 수 있음
- *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조례규정에 따라 권리옹호기관으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하였고,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위탁받아 운영

〈장애인복지법상의 중앙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³⁹⁾

중앙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학대 예방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 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38) 동법 제34조 제3항, 제4항

39) 법률에 규정된 옹호기관의 업무는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특히 신고접수에서부터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장애인 회복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장애인학대 사건 처리절차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를 위한 연구와 실태조사, 그리고 관련 통계 등을 생산·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까지 명시하고 있음

4. 여성인권 보호사례⁴⁰⁾

□ 여성인권의 개념 및 종류

여성인권 정책의 두 가지 접근방법

- 여성중심의 접근법(WID : Women in Development)
 - 여성이 사회발전의 주요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전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으로 여성을 위한 정책 이행을 강조하며, 여성의 노동, 빈곤, 문맹, 건강 등의 쟁점을 발전정책의 프로그램 속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여기서 여성인권은 ‘여성’에 초점을 맞추는 인권의 특별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젠더 중심의 접근법(GAD: Gender and Development)
 - 여성중심 접근법의 한계로 인해 여성인권이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 것임에 중점을 두고 젠더(양성관계)라는 사회구조를 발전 프로그램에 통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여기서 여성인권은 남녀 관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모든 인권정책에서 구현되어야 할 방향과 구체적 사업들을 의미하며, 발전의 목표, 모습, 효과에 있어서 남녀 간 권력관계 변화가 중요함

〈WID와 GAD의 차이〉

구분	여성 중심(WID)	젠더 중심(GAD)
개념	• 여성에게 초점 • 주로 저발전 상태,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 남성, 여성에게 초점 • 남성, 여성의 동시 발전을 고려
사례	• 여성중심의 가족계획 정책 • 저소득 편모가정의 생활지원금 정책	• 부모 모두에게 출산휴가 부여 • 1년 유급 육아휴직제 중 최소 한달을 아버지가 사용하도록 의무화(노르웨이)

□ 여성인권 관련 국제법체계

- 여성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인권법들은 그 내용면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의 금지’와 ‘폭력의 방지’로 집약가능하며, 일반 국제인권법을 바탕으로 함
- UN헌장 (The Charter)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설립된 법으로 “성차별 없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그 활동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40) 정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희진 연구원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현대 국제인권법의 초석으로 여겨지고 있음
 - 전문에서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중략)“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현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및 남녀평등원칙을 근간으로 함을 천명하고 있음
-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협약은 1919년 창설 이후 ‘여성과 연소자의 보호’에 주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 산하 특별전문기구로 전환하면서 ‘남녀고용평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국제인권장전(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은 1966년 UN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선언적 원칙들을 ‘구속력’ 있는 일반조약으로 만들기 위해 UN 총회의 결의를 통해 2개의 특별한 국제인권협약을 채택하였고, 197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A규약)’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규약)’을 발효함
 -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4월 10일 이들 규약 중 ‘제2선택의정서(사형제폐지)’를 제외한 문서에 가입

□ 국내 여성인권 보호 법률 및 정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⁴¹⁾」이 시행되고 있음. 법실증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990년대 활발한 입법추진을 통해 여성의 권리가 주장되기 시작하면서 「여성발전기본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 등 많은 여성인권 관련 법제가 마련되었으며, 2001년에는 인권 및 차별 사안을 다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함

41)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08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여성 권리보호 정책 사례⁴²⁾〉

구분		여성 권리보호 정책
법률	여성할당제	1995년 12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정책 관련 법률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법률적인 근거를 얻게 됨
	성인지 예산 보고서	국가재정법(제26조, 제57조)을 근거로 정부의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혹은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의무화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
중앙 정부	여성가족부	1998년 여성특별위원회에서 2001년 여성부로 승격, 2016년 여성가족부로 변경 - 정부조직법 제42조(여성가족부)에 근거하며,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의 성평등 정책 수립과 국민 행복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지자체에서도 서울여성가족재단, 경기여성가족재단,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등이 있으며, 산하 양성평등교육센터 등에서 각종 성별 법안들이 지정하는 내용을 시행
지자체	여성전용 정책	- 여성직장인아파트, 여성도서관, 여학생휴게실, 여성쉼터 등의 정책 - 지자체 산하 여성정책연구기관, 여성안심숙박업소,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여성안심택배함, 임신부배려석, 여성주차장

- 이후 우리나라의 친족 및 가족제도 하에서 여성의 구성원권(membership)을 인정한 각종 판결⁴³⁾을 통해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었고, 여성피해자보호지원 및 각종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 그 외 한국여성진흥원의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운영,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바른여성인권연합의 가족 지향 문화사업 운영 및 법과 정책 개선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42) 나무위키 참조(<https://namu.wiki/w/>)

43) ① 200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민법상의 호주제도의 중심 조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호주제는 남계혈통중심의 가족형태를 강요해 혼인에 있어 개인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하며, 이혼 후 어머니가 자신의 호적에 아이를 넣겠다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우에 대해 아이는 아버지의 호적에 올려야 한다는 민법781조는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 ② 대법원에서는 '종중(宗中)'에서의 여성 종중의 지위를 확인하는 결정 판결

5. 사례 비교

□ 연구자 권익침해 및 보호 사례 특성

- 연구자의 권익침해 사례 유형은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연구개발 중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문제와 연구원에 대한 갑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대학원생 권리장전에 위배되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권익침해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⁴⁴⁾
 - 학생연구원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부당한 인건비 수령, 폭언 혹은 인격권 침해, 건강과 휴식에 대한 침해, 논문 등 저술 관련 저작권, 부당한 평가, 성희롱 등이 주로 발생
 - 침해를 위한 구제조치로 대학 내 상담 창구, 반부패·청렴 위반 정부 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포털(CRE) 등을 통해 신고·접수됨
- 하지만 연구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식재산권,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 R&D평가, 연구비 집행 분야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윤리적 문제,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포함하는 갑질 등이 각기 다른 기준과 규정에 의해 침해로 판단되거나 제재되고 있음

□ 사례 비교를 통한 연구자권익보호 실태

- 분야별 권익보호 사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함. 연구자 권익보호는 교원과 학생의 권익 보호를 아우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 여성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⁴⁵⁾

〈분야별 권익보호 정책(기관) 비교〉

구분	교원	학생	장애인	여성	연구자
권리장전	●	●			▲
법령·규정	●	●	●	●	
국가(기관)위원회			●	●	▲
시도(기관)위원회	●	●	●	●	
상담보호센터	●	●	●	●	
구제심의기관 ⁴⁶⁾	●		●	●	●

* 출처 : 조성식·, 이지혜, 2023년 하계기술경영경제학회 발표

44) 연구자의 권익보호는 가진 자의 권리를 중첩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나, 다양한 종류의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자 중 취약계층에 속하는 학생, 장애인, 여성 연구자들의 권익을 중심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함

45)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장애인과 여성이 가장 많은 권리침해를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음

46)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장애인 및 여성의 권리 구제심의기관으로 판단했으며, 교원은 국가인권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연구자는 제재처분재검토회의를 구제심의기관으로 두고 있음

- 국내에는 학생연구자에게 한정된 권리장전만 체결되어 있을 뿐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범위를 포괄하는 권리선언서,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음⁴⁷⁾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범부처 기구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와 동법 시행령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조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함으로써 그 역할과 위상에 제약이 따름
-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에서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제재처분 재검토 활동 외 이를 이행하는 주요 행위자인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집행되지 못하는 실정임을 알 수 있음

47) 북미권에서는 연구자를 위한 권리 보호를 위해 'Right as a research participant', 'Bill of right for research participants'를 명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정, 가이드라인을 보유한 기관도 있음

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탁을 받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한 ‘2023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사업 최종보고서입니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시행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